

KMI 동향분석

VOL.42
2017 AUGUST

발간년월 2017년 8월(통권 제42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정명화 국제수산연구실장
(jmh@kmi.re.kr/051-797-4571)
이상건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glee@kmi.re.kr/051-797-4597)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월 5일(뉴욕 현지 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에 일부 허용되었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북한의 대외 수출 규모를 대폭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2015년 기준 약 1억 37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액 28억 달러의 약 3.7%에 해당한다. 연체동물류가 약 2.7%(7,640만 달러), 갑각류 및 패류가 약 0.96%(2,73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수산물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량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길림성 등지에서 북한 수산물을 수입·가공하는 약 150개의 중국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 수역으로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최대 1,904척, 2016년에 1,268척의 어선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 수역에 입어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와 관련해 척당 입어료가 3만~4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연간 입어료 수입이 약 3,045만~6,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UN 결의 2371호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강경한 조치라는 점에서 수산물 수출 금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UN 결의 2371호는 중국의 어업 및 수산물 수입·가공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산물 수입에서 길림성 지역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와 게(조제품)의 약 69%, 67%가 길림성에서 수입되고 있다. 길림성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이 전량 북한에서 수입된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부 물량이 북한산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대북한 수산물 수입 감소가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수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시해야 한다. 둘째, 이번 UN 결의 2371호를 바탕으로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를 주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은 50톤~200톤의 선단 규모로 주로 쌍끌이 트롤 조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동해안 지역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등의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어구 훼손, 안전 조업 저해 등의 간접 피해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UN, 대북제재 조치 강화한 결의 2371호 만장일치로 채택

■ UN 결의 2371호, 북한 정권의 실질적 영향 미치는 제재 조치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월 5일(뉴욕 현지 시간)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하여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강화한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화수입 차단 조치가 추가되었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단체가 확대되었음
- 아울러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통제 품목 추가, UN 안보리 북한제재위(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에 금지 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되었음
-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고 북한 회사와 신규 합작 투자 금지, 기존 합작 투자는 신규 투자를 금지함

표 1. UN 대북제재 2371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외화수입 차단조치	· (기존 제재 확대강화) 수출 전면 금지 - 석탄, 철광석, 철 · (신규)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 금지 · (신규)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북한 기업 및 개인과 신규합작사업 금지 ·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2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 북한 WMD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3 선박 차단	· 북한 제재위에 금지 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 UN 회원국은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4 제재 대상 확대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 신규 제재 대상 지정
5 인권	· 북한 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 표명

자료 1 : UN 홈페이지, “Security Council Toughens Sanctions Agains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2371 (2017)”

(<https://www.un.org/press/en/2017/sc12945.doc.htm>)

자료 2 : 연합뉴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 … ICBM 발사 강력대응”(2017년 8월 6일자 기사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6/0200000000AKR20170806003700072.HTML>)

■ 북한 수출 금지 품목에 이례적으로 수산물 포함

- 북한 수출의 약 30%를 차단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는 기존 생계 목적으로 일부 수출이 허용되었던 석탄, 철광석, 철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산물이 새롭게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됨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북한 수출 제재 대상인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7억 6천만 달러, 수산물 수출액을 3억 달러로 추정 발표함

표 2. 북한 제재 대상 수출품목의 추정 수출액

(단위 : 백만 \$)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납, 납광석
401	250	300	110
(4,511억 원)	(2,812억 원)	(3,375억 원)	(1,237억 원)

주 1 : 해당 추정 수출액은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인용함

주 2 : 원화금액은 현행 원-달러 환율 1,125원(2017년 8월 8일)을 적용함

자료 : 미국 UN 대표부 홈페이지, “FACT SHEET : Resolution 2371(2017) Strengt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https://usun.state.gov/remarks/7924>, 2017 8월 5일 검색)

표 3. 기존 UN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구 분	결 의	주요 내용
1	2087호 (2013년 1월)	· 대량 현금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캐치 올 통해 제재품목 외 군사적 전용 우려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 통제 · 트리거 조항 강화(북한 도발시 ‘중대한 조치’ 예정 명시)
2	2270호 (2016년 3월)	· 북한 광물 수출 금지품목 -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민생 목적의 경우는 제외) · 북한 제재 대상 개인(28명)·기관(32개) 60곳으로 확대 - 기존 대상에서 단체 12개와 개인 16명 28곳이 새로 블랙리스트에 등재 · 모든 북한행(行)·발(發) 화물의 해운·항공운송 차단
3	2321호 (2016년 11월)	· 북한 석탄 수출 상한 설정 - 2017년 1월부터 중량, 액수 기준 2015년 수출량 1,960만 톤의 38%만 수출 ·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의 수출 금지 품목 확대(28조) · 대형 조형물의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 금지(29조) · 유엔 회원국의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 공급·판매·이전 금지(30조) ·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제한 압박(34조) -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 획득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으로 일하도록 송출하는데 우려 표명,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주의 기울일 것을 촉구 · 금융 제재 강화(31조) -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 없는 회원국은 90일 이내 북한에 있는 대표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조치 · 무역을 위한 공작·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제공 금지(32조)

자료 1: 연합뉴스 기사, “대북제재결의 2270호 주요 내용” (2016년 3월 3일자, 11월 30일자 검색)

자료 2: 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2016년 11월 30일자 검색)’인용, 저자 재정리

북한 수출 제재 품목, 수산물 교역 현황

■ 북한 수산물, 전체 수출의 약 3.7% 차지

- 미국 MIT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8억 3천만 달러로 세계 119위를 기록함¹⁾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크게 석탄(34%), 의류(24.4%), 수산물(3.67%) 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23억 달러, 83%), 인도(9,780만 달러, 3.5%), 파카스탄(4,310만 달러, 1.5%) 등임

그림 1.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자료 : MIT 대학 OEC 연구랩 자료 활용(altas.media.mit.edu)

■ 수산물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주로 오징어와 대게 수출

- ‘15년 기준 북한 수산물 수출액은 1억 370만 달러를 기록(한화 1,224억 원), 북한 전체 수출의 약 3.7% 차지함²⁾
- 주요 수출되는 수산물은 연체동물류(0307류)와 갑각류 및 패류로 각각 수출액이 7,760만(2.7%) 달러, 2,730만 달러(0.96%)임
- 금액 기준 수산물 수출의 99%는 중국이며, 그 외 프랑스, 파키스탄 등에 일부 수출됨

1) MIT 대학 OEC 연구랩 자료 활용(altas.media.mit.edu)

2) 북한이 공식 발표한 수산물 수출액 자료는 없으며,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거울통계에 따라 다룰 수 있음

중국, 북한산 수산물 수입·가공업체 피해 불가피

■ 중국, 최근 3년간 대북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기록

- 2016년 기준 중국은 북한에 7천 7백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 1억 9천 4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1억 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對북한 수산물 수입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7.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표 4. 중국의 對북한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수출	47	76	86	88	77	12.9
수입	102	119	145	111	194	17.5
무역수지	-54	-43	-59	-23	-117	21.1

주: 해당 교역액은 우리나라 수산물 HS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7.8.7. 기준)

- 최근 3년 평균, 對북한 수산물 수입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① 기타연체동물(36.9%), ② 오징어(34.7%), ③계(20.2%) 순이며, 이들 3개 품목의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함
- '14년 이후 오징어 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타연체동물과 계 수입이 증가하였음

표 5. 중국의 對북한 주요 수입 품목(HS 8단위 기준)

(단위 : 백만 \$)

구분(HS)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145.4	110.6	194.1	150.0	100.0
1 03079900	기타연체동물(냉동)	0.0	26.9	135.8	54.2	36.1
2 03074900	오징어(활·신냉 이외)	111.8	43.1	0.2	51.7	34.5
3 03062499	게(냉동 이외)	16.3	25.8	19.0	20.4	13.6
4 03061490	게(냉동)	1.9	1.3	23.2	8.8	5.9
5 03055990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	1.6	1.9	5.0	2.9	1.9
6 03048100	연어(피레트)	6.3	1.9	0.0	2.7	1.8
7 03072190	가리비(활·신냉)	1.5	2.2	3.8	2.5	1.7
8 16051000	게(조제품)	0.6	1.0	1.8	1.1	0.7
9 03082190	성게(활·신냉)	0.7	0.8	0.8	0.8	0.5
10 03079190	기타연체동물	0.3	1.5	0.1	0.6	0.4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7.8.7. 기준)

■ 중국 훈춘 등 북한 국경 지역 수산물 수입·가공업체 타격 예상

- 2016년 기준, 북한과 중국 국경과 인접한 훈춘 지역에 148개의 수산·가공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수산물 생산액이 약 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³⁾
- 중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일부 수산·가공업체들이 수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북한 지역과 인접하고 저렴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훈춘 지역으로 이동하였음
- 바다가 없는 내륙 도시인 훈춘 지역이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하여 수산경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수산물 마케팅 전략은 “해외에서 원료 수집, 국내 가공, 해외 판매”임
- 주요 생산되는 품목은 명태, 대구, 오징어 가공 등임
- 북한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자연산, 청정 지역 생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중국내 수요가 높아 하얼빈 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 청두, 네이멍구 등 내륙도시로 보내지며, 일부 한국, 일본, 미국 등으로도 수출되는 경우가 있음⁴⁾⁵⁾

3) “Large Chinese firm abandons plan to join seafood export hub near North Korea”, UNDERCURRENTNEWS, 2017년 7월 17일자 기사 검색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7/17/large-chinese-firm-abandons-plan-to-join-seafood-export-hub-near-north-korea/>)

4) “Hunchun-Zarubino link aims to reshape sea freight routes in NE China”, GLOBAL TIMES, 2016년 12월 18일자 기사 검색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24334.shtml>)

5) “How Banned North Korean Seafood Could End Up on Your Dinner Table”, Reuters, 2016년 12월 21일자 기사 검색 (<http://fortune.com/2016/12/21/north-korea-seafood-exports-banned/>)

- 북한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가공 원료 수급 및 생산, 신규 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이미 최근의 정세 변화로 인해 훈춘 지역 추가 가공공장 설립 계획이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지난 8월 5일 UN 결의 채택 이후 북한산 오징어의 가격이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구매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상태임⁶⁾

그림 2. 중국 길림성 훈춘 지역 수산가공업체 현황(2015년 기준)



자료 : “Large Chinese firm abandons plan to join seafood export hub near North Korea”, UNDERCURRENTNEWS, 2017년 7월 17일자 기사 사진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 북한 수역 내 중국 어선 입어 금지 가능성도 높아져

- 중국은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 수역으로 어선이 입어하고 있음
- 제1차 북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던 2004년 총 114척의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동해를 경유해 북한 및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입어 척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 1,904척, 2016년에는 1,268척이 입어한 것으로 확인됨

6) “New sanctions collapse North Korean seafood prices, but Pyongyang vows to continue nuclear program”, THE GLOBE AND MAIL, 2017년 8월 7일자 기사 검색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new-sanctions-collapse-north-korean-seafood-prices-but-pyongyang-vows-to-continue-nuclear-program/article35892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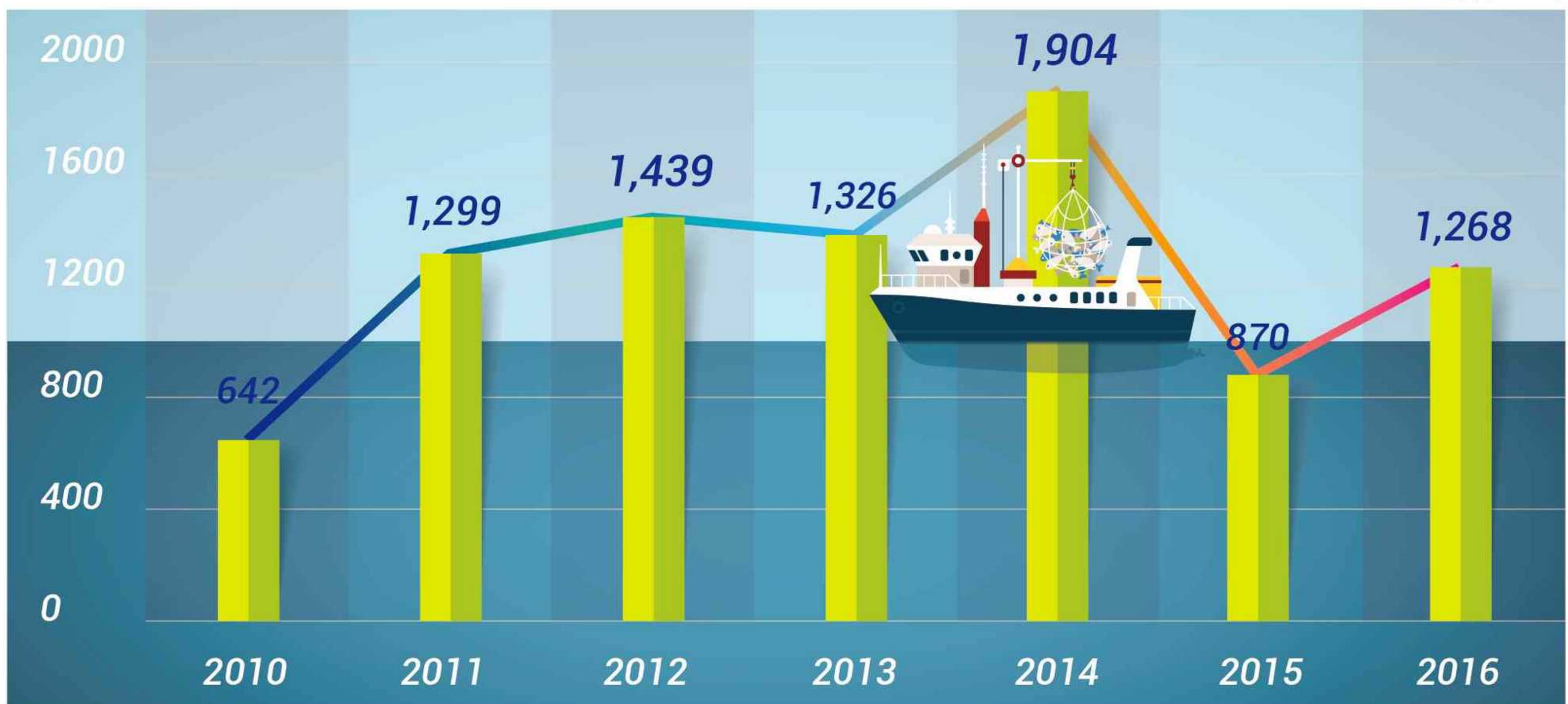
표 6. 북중 어업협정 개요

체결시기	내용
2004년 6월	제1차 북중어업협정('04~'08년 5년간)
2010년 4월	제2차 북중어업협정('10~'14년 5년간)
2015년 7월	제3차 북중어업협정('15~'16년, 2년간, 연장가능)

자료: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2016, p.72 <표 4-2> 인용

그림 3. 동해 북측수역 중국어선 입어 현황

단위 : 척



자료 :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2016, p.77 <그림 4-10> 인용 및 동해어업관리단 담당자 전화 인터뷰를 근거로 재작성

-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에 대한 자료가 공식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현 해양경찰청)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척당 3만 달러('14년 기준)~4만 달러('15년 기준) 수준임⁷⁾
- 2014년~2015년 중국 어선의 평균 입어료를 고려한 북한의 입어료 수입은 3,045만 달러~6,664만 달러로 추정 가능하며, 이는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의 약 10~22%를 차지하는 수준임⁸⁾
- 이번 UN 결의 2371호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수산물 수출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7) 강원도환동해본부,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연구」, 2016, p.74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는 연간 척당 3만 달러('14년 기준)에서 4만 달러('15년 기준)로 추정됨. 본 연구진의 중국 현지 조사 결과, 실제 입어료는 브로커 비용으로 약 2만 달러 등을 포함해 연간 척당 6~8만 달러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 인용

8) 북한 입어료 수입 비중은 UN이 공식 발표한 북한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미국 MIT 대학의 연구 결과(2015년)와 상이함

우리나라, 대북 제재에 따른 수산물 수입 간접 영향 예의주시해야

■ 우리나라, 중국 길림성 수산물 수입 연평균 12% 증가세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수산물을 성(省)별로 파악한 결과, 지난 5년간 중국 산둥성에서 수산물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그 뒤를 이어 요녕성, 절강성, 복건성 순으로 수입됨⁹⁾
- 지난 5년(2012~2016) 평균 대중국 전체 수입액에서 산둥성 지역 수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9%이나 북한과 인접한 길림성 지역 수산물 수입은 201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 길림성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2012년 4만 7천만 달러에서 2016년 7만 3천만 달러로 연평균 약 12% 증가하였음

표 7. 중국 성(省)별 대한국 수산물 수출액

(단위 : 천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감율 (‘12~‘16)
합계	1,222,289	1,138,967	1,365,948	1,305,653	1,347,920	2.5
1 산둥	326,579	340,044	396,229	378,232	391,192	4.6
2 요녕	255,326	236,845	312,021	282,379	263,392	0.8
3 절강	161,890	156,029	235,428	225,306	212,215	7.0
4 복건	201,643	143,679	124,809	102,894	147,646	△7.5
5 하북	59,511	62,838	88,510	88,626	90,621	11.1
6 강소	60,669	60,944	65,069	78,267	76,447	5.9
7 길림	47,036	39,780	44,224	55,246	73,356	11.8
8 광둥	49,926	48,243	46,206	39,883	39,974	△5.4
9 해남	40,493	26,101	25,121	22,119	27,785	△9.0
10 광서	3,775	4,598	5,523	9,436	10,628	29.5
11 천진	6,542	8,949	7,975	5,215	7,029	1.8
12 상해	7,316	5,173	5,490	8,543	5,341	△7.6
13 흑룡강	217	214	119	29	1,450	60.8
14 청해	235	3,708	7,888	7,517	497	20.6
15 호북	509	350	259	1,840	177	△23.2

자료 :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활용, 저자 재작성(<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9)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 수산물을 성별로 분류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무역협회의 중국의 대한국 수출 수산물을 활용, 성별로 분류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즉,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 수산물을 수입 수산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 중국 길림성에서 수입되는 기타어류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 제품의 수급 영향 모니터링 필요

- 우리나라가 중국 길림성에서 주로 수입하는 수산물인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건조·염장), 게(조제품)임
- 중국 길림성산 수입 수산물 가운데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는 품목은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건조·염장)(HS 코드 03074900)로 2012년 26톤(7만 6,000달러)에서 2016년 446톤(109만 9,000 달러)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3%임
- 주목할 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와 게(조제품)의 69%, 67%가 길림성 지역에서 수입됨
- 다만 중국 길림성산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건조·염장)의 수입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중국 전체 수입에서 길림성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임
- 따라서 중국 길림성에서 수출된 수산물이 전부 북한에서 수입된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부 물량이 북한산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 수출 중단으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수산물 수입 감소 영향이 연쇄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기타어류, 냉동 게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표 8. 우리나라의 대중국 길림성의 수입 수산물

구분	HS코드	상세품목명	2012		2016		연평균 증감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03055990	기타어류(건조·염장·훈제)	3,799	34,495	4,680	46,355	5.4	7.7
2	03074900	갑오징어 및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26	76	446	1,099	103.5	95.0
3	16051000	게(조제품)	57	257	73	692	6.4	28.1
4	03061490	게(냉동)	334	1,251	88	506	△28.4	△20.3
5	03082190	오징어(냉동, 건조, 염장)	91	144	0	0	△100	△100

자료: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활용, 저자 재작성(<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 UN 결의 2371호 활용,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금지 주장 고려

- 중국은 북한과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입어하고 있으며 2016년 1,268척이 입어하였음
- 중국측 선단 규모는 50톤~200톤 정도이며 쌍끌이 트롤 조업 방식을 통해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을 대량 생산함에 따라 우리나라 동해 지역 오징어 생산량 감소 피해를 겪고 있음
- 오징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미래 수산자원 감소, 부설 어구 훼손, 안전 조업 저해, 중국 어선 단속에 따른 행정 비용 등의 간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 북중 입어협정에 따른 북한의 입어로 수입이 북한 수산물 수출액의 약 10~22%를 차지하는 수준인 만큼 이번 UN 결의 2371호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동해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의 입어 금지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파제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대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저렴한 소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첨병!,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URL : http://www.kmi.re.kr/		